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수시점검 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점검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68호, 2023. 6. 13. 공포, 2024. 6. 14. 시행)됨에 따라 점검실적을 매반기마다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엔진소음차단시설 등이 임의로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도 운행차 수시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 (생략) <u><신 설></u>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매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자동차제작자가 소음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엔진소음차단 시설 등이 임의로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떼어지지 아니한 자동차</u>	<u><삭 제></u>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	------------------